- 인천항 컨테이너 물통량 증대를 위한 -'19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(안)

2019. 3.

인천항만공사 글로벌물류전략실

□ 선사 인센티브

- ◎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업체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◎ 인센티브 총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제1기준 : 신규서비스 개설 선사 (참여선사 포함)

대 상	'19년 신설 서비스 참여 선사 및 전략 지역 항로 유지 선사				
	- 운항 지역별 서비스당 지급 기준				
	운항지역	지급총액	비고		
	전략 지역	4억원	· 미주 및 유럽항로 서비스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노선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* 추가 필요 시 예산 추가 편성하여 지급		
	기타 지역	4억원	· 각 서비스별 지급상한액의 비중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분할 지급 · (지역별 서비스당 지급상한액) : 인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 3억, 동남아, 극동러시아 2억, 중국, 일본 등 0.5억		
세부기준	- 1년간 신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, 연간 최소 3만TEU 이상 처리 시 인센티브 지급				
	- Weekly 서비스 제공 노선에 한해 지급하며, 해당 서비스 개설 후 1년간 선사별 처리 실적의 점유율만큼 분할지급(선복임차 선사 포함)				
	- 해당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신규항로 서비스에 한해 신규 항로로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신규항로로 인정치 않음				
			이내만 변경된 경우 항로조정으로 간주, 단, 운항지역이 경우에는 신규항로로 인정		
	ex) (인천	~중국) →	(인천~중국~동남아) or (인천~동남아)		
	- 기타 신규선	선대 인정이	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		
예 산		8억	원 (필요시 별도 추가 예산 배정)		

- 제2기준 : 신규항로 개설 특별 인센티브

대 상	'19년 신규 서비스 제공 선사 대상 (8월 이전 개설)
세부기준	- '19년 8월말 이전 인천항 신규 '컨' 서비스 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항로 개설 순서대로 특별 인센티브 추가 제공 · 미주·유럽지역 : 3억원 · 인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지역 : 2억원 · 인트라아시아 : 1억원 - 최초 4항차 기항 후 지급하며, 인천항에서 주 1항차 서비스를 1년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후 지급한 인센티브 반납 조건 - 4항차 입항 시점까지의 선사별 선복량 얼로케이션을 기준으로 지급액 분할하여 지급 * 의무 유지기간 1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 7회 이내 미기항하는 경우, 타당한 사유 인정 시에만 인센티브 지급. 7회 초과 미기항시 미지급
예 산	5억원

- 제3기준 : 물동량 증가 선사

대 상		, –	·	상 처리선사 중 전년대비 5% 이상 처리실적		
,, ,	증가선사 (적/공, 수출/수입/환적 전체 포함)					
	- 인천항에서 반기별 1만TEU 이상 처리한 선사를 대상으로 지급					
	- '19년 인천항에서 반기별 처리물동량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					
	선사에 대해 구간별 지급총액 범위 이내에서 각각 별도 지급					
	· 5%, 7%, 10% 이상 처리 선사를 대상으로 구간별 별도로 지급하며, 다 구간					
	중복 해당 시 각 구간별 지급액을 중복하여 지급					
	-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하며,					
세부기준	1TEU당 최대 1,500원 지급 (상한선)					
	증가율	지 급 총액	반기별 지급액	내용		
	5% 이상	1억원	0.5억원	· 5% 이상 증가 선사의 전체 증기량 합계 중 각 선사별 증기실적의 점유율대로 0.5억원 범위 이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총 2회 지급		
	7% 이상	2억원	1억원	· 7% 이상 증가 선사의 전체 물동량 합계 중 각 선사별 물동량의 점유율대로 1억원 범위 이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총 2회 지급		
	10% 이상 	3억원	1.5억원	· 10% 이상 증가 선사의 전체 물동량 합계 중 각 선사별 물동량의 점유율대로 1.5억원 범위 이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총 2회 지급		
예 산	6억원 (반기별 예산 3억원)					

- 제4기준 : 환적화물 인센티브

대 성	ያ	'19년 반기별 3,000TEU 이상 환적화물 처리선사
세부기증	<u>ح</u>	- '19년 인천항에서 반기별 환적화물 3,000TEU 이상 처리선사 대상 지급 - '19년 인천항에서 처리한 환적화물 물동량에 대하여 1TEU 당 최대 1,500원 지급 - 예산 초과 시 해당 선사의 물동량 점유율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-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지급
예 신	산	1억원 (반기별 예산 0.5억원)

- 제5기준 : 선박교체 인센티브

대 상	'19년 선박교체 목적으로 인천항 입항 선사
세부기준	- '19년 선박교체 목적으로 인천항으로 입항한 '컨'선박에 대해 예선료 및 도선료 100% 지원 · 기존 인천항 기항 서비스 투입 선박은 입항 시에만 1회 지원 · 기존 인천항 기항하지 않았던 서비스 투입 선박이 선박교체 목적으로 인천항 이용할 경우 입항 및 출항 시 총 2회 지원 - 예산 소진 시점까지 유효하며, 입항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적용
예 산	1억원 (반기별 예산 0.5억원)

□ 화주 인센티브

- ◎ 인센티브 금액 확정 후 지급 관련, 필요 시 항목 및 기준 간 조정하여 사용 가능
- 제1기준 : 원양항로 활성화 기여 화주(일반화물)

대 상	원양 지역(미주·유럽) 개설 직항을 통해 '작'컨테이너 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화주
	- (수입) 반기별 50TEU이상 수입한 화주에 대하여 1TEU당 10천원 지급
	- (수출) 반기별 25TEU이상 수출한 화주에 대하여 1TEU당 20천원 지급
	- 인천항에서 개설된 원양지역 직항로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으로 수출
	또는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지급
 세부기준	* 미주지역 : 북미 및 중남미 전체 지역
^	* 유럽지역 :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지역으로 지중해 및 유럽 전체 포함
	ex) 인천←미주의 경우 인천 개설 미주 직항을 통해 북미 및 중남미 수출입 화물 전체 해당
	ex) 인천 유럽의 경우 수에즈 운하 통과 후 지중해 및 유럽지역 수출입 화물 전체 해당
	- 증빙 : Master B/L 상의 수출·수입 업체를 기준으로 지급
	-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 2회 지급
예 산	2억원 (반기별 예산 1억원)

- 제2기준 : 원양항로 활성화 기여 화주(냉동·냉장화물)

대 상	원양 지역(미주·유럽) 개설 직항을 통해 Reefer(냉동·냉장) '적'컨테이너 화물을 수출
41	또는 수입한 화주
	- (수입) 반기별 냉동·냉장화물을 10TEU이상 수입한 화주에 대하여
	1TEU당 50천원 지급
	- (수출) 반기별 냉동·냉장화물을 10TEU이상 수출한 화주에 대하여
	1TEU당 50천원 지급
	- 인천항에서 개설된 원양지역 직항로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으로 수출
 세부기준	또는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지급
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ex) 인천~미주의 경우 인천 개설 미주 직항을 통해 북미 및 중남미 수출입 화물 전체 해당
	ex) 인천 유럽의 경우 수에즈 운하 통과 후 지중해 및 유럽지역 수출입 화물 전체 해당
	- 증빙 : Master B/L 상의 수출·수입 업체를 기준으로 지급
	-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 2회 지급
	* Reefer 축산물(가금류 제외)의 경우 지역 및 직항서비스 이용 여부와
	상관없이 인천항 양하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 가능
예 산	3억원 (반기별 예산 1.5억원)

□ 포워더 인센티브

- 제1기준 : 수출 증가 포워더

대 상	'19년 반기별 인천항 이용 '컨'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0ton 이상 증가한 포워더 ('19년 인천항 신규 수출 실적 150ton 이상 발생 포워더 포함)
세부기준	- 인천항에서 반기별 처리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150km 이상 증가한 포워더들의 전체 증가실적 합계 중 각 포워더별 증가실적의 점유율대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지급 - 업체별 지급상한액: 2천만원 -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연 총 2회 지급 - 증빙: 운송주선인의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며, 정확한 물동량집계를 위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검증 요청
예 산	4억원 (반기별 예산 2억원)

○ 상반기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화주인센티브 > 선사인센티브 기준1 (원양) > 선사 인센티브 기준1 (기타) 순으로 예산 추가 배정 가능